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9.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7월 31일, 정태호의원 등 2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4월 1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2025.9.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1차 탄소중립기본법 심사소위(2025.9.22.)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폐기)

제6차 전체회의(2025.9.23.)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
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정태호의원)

현행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2050 탄소중립녹색

성장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별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두고,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가를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함에 있어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 기후위기와 관련 정책으로 인한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거나 받을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창구가 공식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중앙·지방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에 장애인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후위기 관련 정책 수립 시 장애인의 현황과 권리 수준이 재고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5항 및 제22조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개정안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 위원 위촉시 장애인 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5항 및 제22조제3항)

현행법 제15조¹⁾ 및 제22조²⁾는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 위원 위촉시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직·간접적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기후위

-
-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① 정부의 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4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2.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⑧ 제4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③ 지방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제4항(제1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제4항에 따른 심의 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기 관련 정책 수립 시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창구가 공식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측면이 있음.

특히 현재 2기 2050 중앙 및 지방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촉위원 구성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 위원이나 장애 관련 전문가가 전혀 없는 상황(참고자료)으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고, 기후 위기가 또 다른 불평등³⁾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⁴⁾.

이에 개정안은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 위원 위촉 시 장애인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위기 관련 정책 수립 시 이를 반영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기후 위기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입장을 고려하는 등 장애인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현행법 제15조제5항의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인, 시민사회단체 등’은 다양한 사회계층에 대한 예시로 장애인, 종교계 등 명시되지 않은 계층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개정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고, 위원 위촉 시 대표성 외에도 전문성·공정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

3) 정부 및 기업의 친환경 정책으로 인하여 1회용품 줄이기 정책 등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의 직접적인 매출하락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매출감소가 고용된 장애인들의 실직으로 이어질 수 있음.

4) 한국장애인개발원, ‘탄소중립 녹색사회를 위한 장애계 대응 방안 연구’, 2022.10.

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생략

6.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사항

없음